

의안
번호

408

2025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2025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02. 20.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408호
- 다. 제출일자 : 2025. 02. 04.
- 라. 회부일자 : 2025. 02. 10.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2025 성북 시티투어”를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업 : 2025 성북 시티투어 운영
- 위탁기간 : 2025. 4. ~ 11.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시티투어 종료 시까지)
- 위탁내용 : 2025 성북 시티투어 운영 및 관리
 - 성북 시티투어 사업계획(코스개발 등) 수립을 통한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이용자를 위한 편리한 예약 시스템 개발·운영 및 신청접수 관련 업무
 - 2025 성북 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홍보
 - 수행인력, 버스임차(버스랩핑 포함), 안전관리, 관광편의 제공 등
 - 기타 성북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 위탁비용 : 총100,000천원
- 수탁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 여행업에 등록된 자
 - ※ 여행업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대형버스(45인승) 확보(전세버스회사 임대계약 포함) 가능한 사업자
 - 시·구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운영한 사업자
 - 공고일 현재 신청인의 주사무소가 경기도 및 서울시 소재인 자
- 위탁업체 선정 : 공개 모집 후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의 후 선정

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 「2025 성북 시티투어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전문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기관·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5. 검토의견

□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 시티투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하여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성북 시티투어' 운영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시티투어 종료 시까지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시티투어 운영개요

□ 운영개요

- ('25년 예산) 총 100,000천원(전액구비)
- 운영형태 : 성북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거점을 잇는 테마형 버스투어
- 운영기간 : 2025. 4. ~ 11. 10:00~17:00(주 2회) / 총 60회 운영(예정)
- 운영요금 : 5,000원~10,000원(입장료, 체험료 포함 / 식사 미포함)
- 운영코스 : 테마별 코스 운영 ※ 선정업체 제안코스 활용 및 협의 예정
- 운영코스 예시(2024년 코스)
 - (청와대 코스) 성신여대입구역(집결) → 북악스카이웨이(버스이동) → 청와대 → 자유중식 → 성북근현대박물관 → 심우장 → 길상사 → 한성대입구역(해산)
 - (가족힐링 코스) 석계역(집결) → 의릉,의릉역사문화관,둘레길 산책 → 자유중식 → 한양도성&와룡공원&심우장 → 길상사 → 성북근현대박물관 → 한성대입구역(해산)

시티투어 실적

□ 추진실적

구분	운영기간	운영형태	총사업비(천원)	운영실적
계	-	-	406,120 (시 400,000/구비 6,120)	총 194회, 3,992명
2024	2024.10.	(주)로망스투어(수의계약)	6,120(구비)	총 5회, 165명 ※시비 미확보로 역사문화탐방 행사운영비 활용 추진
2023	2023.6.~12.	(주)로망스투어(민간위탁)	143,713(시비)	총 85회, 2,291명
2022	2022.10.~12.	(주)로망스투어(수의계약)	56,287(시비)	총 29회, 888명
2021	2021.8.~11.	성북문화재단 (아트버스킹, 민간위탁)	200,000(시비)	총 75회, 648명

□ 민간위탁 근거 및 타당성

-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1)에서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2)에 따르면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티투어’ 운영은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예약 시스템개발 및 운영, 홍보 등 관광 인프라 제공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사료 됨.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 ④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구민과 성북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 인프라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구의회 동의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임.